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에 「사법경찰직무법」 개정·시행(‘25.3.18.)으로 인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가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 5명(5급1, 6급3, 7급1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5. 0. 00. 공포 및 0. 0. 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(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645”를 “650”으로, 일반직 계 “644”를 “649”로, 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전산사무관·수의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“109”를 “110”으로, 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약무주사·의료기술주사·전산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“125”를 “128”로, 행정주사보·식품위생주사보·약무주사보·의료기술주사보·전산주사보·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“121”을 “122”로 한다.

별표 3의2 중 총계 “659”를 “664”로, 일반직 계 “658”을 “663”으로, 행정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전산사무관·수의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“113”을 “114”로, 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약무주사·의료기술주사·전산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“121”을 “124”로, 행정주사보·식품위생주사보·약무주사보·의료기술주사보·전산주사보·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“121”을 “122”로 한다.

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
개정령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하고 있는 별표3의2의 정원 2명(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(생 략) 제2조 (생 략) 제3조 (생 략) 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(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	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(현행과 같음) 제2조 (현행과 같음) 제3조 (현행과 같음) 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하고 있는 별표3의2의 정원 2명(행정 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은 2026년 5 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645</u>	• <u>650</u>	+5
일반직 계	• <u>644</u>	• <u>649</u>	+5
행정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수의 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• <u>109</u>	• <u>110</u>	+1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약무 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산주사 · 시설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	• <u>125</u>	• <u>128</u>	+3
•	•	•	

· 행정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· ·	· <u>121</u> · ·	· <u>122</u> · ·	+1
---	--	--	-----------

[별표 3의2]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659</u>	• <u>664</u>	+5
일반직 계	• • <u>658</u>	• • <u>663</u>	+5
행정사무관 • 식품위생사무관 • 약무사무관 • 의료기술사무관 • 의무사무관 • 전산사무관 • 수의 사무관 •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• • <u>113</u>	• • <u>114</u>	+1
행정주사 • 식품위생주사 • 약무 주사 • 의료기술주사 • 전산주사 • 시설주사 • 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	• • <u>121</u>	• • <u>124</u>	+3
• •	• •	• •	

행정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	<u>121</u>	<u>122</u>	+1
·	·	·	
·	·	·	